

해외 건설산업 상생협력 살펴보니

기사입력 2012-10-25 08:00:07 |

폰트 + -



영국 – 발주자~협력사 대금지급 투명 공개, 일본 – 하도급업체와 성과공유 제안제 운용

#1. 영국 정부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공정한 대금지급(Fair Payment Practice)을 의무화했다.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2차 협력사 모두가 약정한 시점에 적정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건설산업 공급망 전반에 적용된다. 이에 대한 투명한 관리도 기본이다.

#2. 일본의 후지타건설은 하도급 건설사와의 성과공유 제안제를 운용한다. 국내의 설계VE(가치공학)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차이점은 하도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전문건설업체로부터 다양한 공법 개선 아이디어를 수렴한 후 이를 하도급자 선정 때 적극 활용하는 점이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산업 상생협력 해외사례’ 보고서를 보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발주기관, 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체에 이르는 건설산업 주체간 상생협력 노력이 두드러진다.

영국 정부가 2008년 1월부터 예산이 집행되는 시설공사에 의무화한 공정한 대금지급제 아래에서는 건설산업의 모든 주체가 언제 얼마를 지급받는지 명확하게 공개된다. 그 실적도 발주기관 별로 철저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대금지급 문화를 정착시켰다. 국내 건설산업의 최대 문제로 부상한 원도급사 부도 문제도 약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공사대금이 산업 주체별로 지급되는 시스템 아래에서는 하도급채권 확보가 용이해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차단된다.

영국 정부는 특히 건설산업 내 파트너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몰아가는 주범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지목하고 단기적 공사비 절감보다 프로젝트 생매주기에 걸친 장기적 공사비 절감에 천착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다양한 표준계약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제도다. 미국에서는 건축가협회, 건설협회, 건설사업관리협회, 디자인빌드협회 등 업계는 물론 발주기관까지 합심해 표준 계약서식을 정립했다. 발주기관이든, 원도급사든 계약 과정의 무월적 지위와 이를 악용할 여지를 근절함으로써 계약문화 혁신을 선도했다.

일본에서는 건설업계 스스로 상생협력 모델을 창출한다. 일본의 대규모 원도급건설사는 하도급사와의 협력회를 구성해 협력회 소속 하도급사에 70%, 기타 하도급사에 30%의 물량을 배분한다. 체계적인 협력사 육성과 외부 하도급사와의 경쟁을 적절히 활용해 균형을 맞춘다.

이에 더해 후지타건설 등 일본의 대형사들은 하도급사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하도급입찰 때 활용한다. 후지타건설의 제안제는 착공 전과 착공 후로 나뉘며 특히 착공 전 제안단계에서 전문업체의 아이디어를 평가, 발굴해 총 원가의 75% 이상이 결정되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 절감효과를 시현하고 있다.

가지마건설도 협력사와의 현장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의 중복투자를 막고 업무효율을 높인다. 시미즈건설도 협력사용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급해 무재해를 통한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다.

해외 선진국의 이런 혁신적 제도는 대기업의 건설생산 활동의 안정성은 물론 중소기업의 수주 안정성과 전문기술 축적을 통한 경쟁력 배양의 토대를 제공한다.

연구원은 제조업과 차별화되는 프로젝트 단위의 건설산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원하도급자간 적대적 관계를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한 상생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과공유제만 해도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과 업종 및 기업 특성을 반영한 성과공유 모델 제시, 그리고 표준 약정서 보급,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에 대한 입찰가점 등의 지원책이 없이는 시장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조언이다.